



ASIA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CENTRE

— A charitable institution limited by guarantee registered in Hong Kong

(서울사무소)

결 정 문

사건번호: KR-0800023
신청인: 닷소에비에이션
피신청인: Anyweb Co., Ltd.

1. 당사자 및 분쟁 도메인이름

신청인: 닷소에비에이션, 프랑스 파리 75008 롱-포앵데 샹제리제-
마르셀 닷소 9

대리인: 변호사 양영준, 변리사 권남연,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자동 223 세양빌딩

피신청인: Anyweb Co., Ltd., 대한민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1동
986-7

분쟁도메인이름들은 “dassaultaviation.com”이며, 피신청인에
의해 “주식회사 싸이덴터티(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26 성문빌딩 6층)”에 등록되어 있다.

2. 절차의 경과

신청인의 2008년 2월 27일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
(ADNDRC) 서울사무소(이하 ‘센터’라고 한다)인 인터넷주소분쟁조
정위원회에 분쟁 도메인이름의 이전을 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008년 2월 27일 센터는 등록기관에게 등록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등록기관은 2008년 2월 27일 센터에 등록인의 확인등 세부사항을 확인해주었다.

2008년 2월 28일 신청인 대리인은 신청인 대리인표시 변경 신청을 하였다.

2008년 2월 28일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가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 (이하 “규정” 이라 한다), 통일도메인이름 분쟁해결규정을 위한 아시아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센터 보충규칙 (이하 “보충규칙” 이라 한다)에 따른 형식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점검하였다.

2008년 2월 28일 센터는 “신청서 전송 표지” 를 분쟁해결신청서와 함께 전자우편으로 피신청인에게 발송하였고, 등기우편을 통해 피신청인에게 발송하여 2008년 2월 29일 피신청인에게 도달하였음을 배달증명 우편을 통해 확인하였다.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기일을 2008년 3월 20일임을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였다.

2008년 3월 20일까지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센터는 피신청인에게 답변서 미제출 통지를 2008년 3월 21일 하였다.

2008년 3월 24일 센터는 이 사건의 분쟁해결을 위한 1인 조정부로서 이덕재 조정위원에게 선임을 요청하였고, 2008년 3월 24일 이덕재 조정위원은 조정위원으로서의 승낙 및 중립성과 독립성의 선언을 확인 받아 2008년 3월 24일 조정부 구성예정통지를 하였고 절차규칙 제7조에 따라 적법하게 2008년 3월 31일 조정부를 구성하였다. 센터는 관련 서류 일체를 2008년 3월 31일 조정부에서 송부하였고 2008년 4월 1일 조정인에게 도달하였음을 배달증명 우편을 통해 확인하였다.

3. 사실관계

신청인은 프랑스 회사 Avion Marcel Dassault S.A.와 Breguet Aviation S.A.가 1971년에 합병하여 프랑스에 설립한 Avions Marcel Dassault Breguet Aviation S.A.이 1990년 현재의 상호로 변경한 항공기제조회사로서, 현재 프랑스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 “DASSAULT AVIATION” 관련 상표 내지 서비스표를 다수 등록하고 있으며, 대한

민국에도 2002년 이후 “항공기 부품인 프레임 등” 을 지정상품으로 한 상표 및 “항공화물운송업 등” 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한 서비스표를 등록하였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여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을 주소로 하는 웹사이트에서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판매 또는 중개 등과 관련한 웹사이트로 링크 및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조정결정시까지 아무런 답변이나 입증하지 않았고, 달리 피신청인의 업무분야나 사업 활동 내역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이 사건 조정부에 제출되지 않았다.

4. 당사자들의 주장

A. 신청인

신청인은 규정 제4조 (a)항에 따라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을 신청인에게 이전하라는 결정 또는 그 등록을 말소하라는 결정을 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Dassault Aviation은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상표로서 항공기관련분야의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으며, 신청인은 위 상표권자로서 위 표장을 상호와 상표로서 사용하면서 <http://www.dassault-aviation.com> 을 홈페이지 주소로 사용하고 있다.

2) 이러한 신청인의 상표와 유사한 이 사건 도메인 이름 등록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어떠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은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

B.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이 없다.

5. 검토 및 판단

규정 제4조 (a)항에 따라 신청인은 신청한 구제를 받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 모두를 입증해야 한다.

(i)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ii) 등록인이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그리고

(iii)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것.

A. 상표와 이 사건 분쟁 도메인이름의 유사여부

신청인의 주장 및 첨부자료 1내지 27에 의하면, 신청인은 항공기관 관련 부품제조업 등의 사업 분야에 종사하면서 DASSAULT와 AVIATION을 1971년부터 상호의 식별력 있는 요부로 사용해 오다가 1990년 상호를 “DASSAULT AVIATION”으로 바꾼 사실, 신청인은 위 상호를 세계 20여 국가에 상표등록을 하고 널리 사용하여 2005년 한 해 총 수주액이 한화 약 6조 409억원, 순매출액이 한화 약 4조 5,000억원에 달하고 전세계 비즈니스 제트기 시장의 40%, 군용기 산업시장의 약 10%를 차지할 정도로 업계 선두주자의 위치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상표는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의 항공기관 관련 분야의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으며, 신청인은 위 상표에 대한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은 `dassault`와 `aviation`을 연결한 것에 불과하여 위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거의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B.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신청인의 주장 및 첨부자료 3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조정부에 제출된 주장 및 첨부자료에서 달리 이에 반하는 사실도 찾을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C.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앞에서 본 바와 같이 Dassault Aviation은 신청인의 상표로서 대한민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항공기관련분야의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상표인데, 이 상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신청인이 이와 거의 동일한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을 등록한 점, 첨부자료 23 내지 27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을 주소로 하는 웹사이트에서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판매 또는 중개 등과 관련한 웹사이트로 링크되는 서비스 및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위 웹사이트에 위 도메인 이름을 판매하고자 하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면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을 신청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하여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정

위에서 검토한 바에 따라, 본 조정부는 규정 제4조 (i)항 및 절차 규칙 제15조에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분쟁 도메인 이름들인 <dassaultaviation.com>를 이전할 것을 결정한다.

이 덕 재

1인 조정부

결정일: 2008년 4월 11일